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 석 순**

국 | 문 | 요 | 약

사법체계의 현실적인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특히 다발하고 있는 경미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이 범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정신적·시간적으로 현저하게 부담스러운 절차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다만 이처럼 신속한 재판이라는 소송경제의 이념이 헌법적으로 선언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소송경제가 법치국가원리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앞서는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졸속재판으로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도 반한다. 따라서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범죄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위 경미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들은 소위 “질서위반법”을 도입하고 비범죄화·질서위반행위화함으로써 범칙행위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 전체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즉결심판의 대상행위 가운데 여전히 형사불법으로 남는 행위유형들은 약식명령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현행 약식명령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경미범죄에 대한 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형사절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 주제어 : 법치국가원리, 피고인의 방어권,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형사절차,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I. 여는 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근거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권리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 별도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함께 규정한 것은, 우선 경미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느린’ 재판을 고집할 경우 형사사법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정작 신중하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 사안에 투입할 에너지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재판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명백하고 가벼운 경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아울러 범죄를 범한 시점과 형벌을 선고받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형벌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된다는 고려도 있다고 한다.²⁾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절차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는 간이공판절차(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와 약식절차(같은 법 제448조 이하), 그리고 즉결심판절차를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 그 가운데 특히 즉결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법률 제8730호, 2007.12.21. 개정; 이하 즉결심판법)이라는 특별법의 형태⁴⁾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이라는 측면,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통일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1) 김용우,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110쪽; 김희욱,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36쪽; 하태훈, 즉결심판절차와 피고인의 인권, 한국법학원보 제85호, 2000, 27-28쪽; 한영수,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1호, 1998, 57-58쪽;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3쪽.

2) 하태훈, 앞의 글, 27쪽; 한영수, 앞의 글, 58쪽.

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이하 배종대 외),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50/3, 92/4, 94/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1524쪽; 김용우, 앞의 글, 110쪽; 손동권, 즉결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93쪽.

4) 배종대 외, 앞의 책, 95/6.

아닌 경찰서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에게 심판청구권, 즉 사실상의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즉결심판절차는 간이공판절차나 약식 절차보다 한층 더 논쟁의 여지가 컸고, 실제로 2005년에 정부차원에서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⁶⁾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경미사건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즉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충실하면서 사법부의 업무경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II. 즉결심판의 개념과 성격

즉결심판절차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3항).⁷⁾ 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피고인을 직접 심리하는 절차이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해 정식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법관이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판전의 절차이다.⁸⁾ 또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서,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며(즉결심판법 제16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특별형사절차라고 할 수 있다.⁹⁾

5) 아래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 가운데 III. 2. (1) 기소독점주의와 관련한 부분 참조.

6) 사개추위, 경미한 형사사건에 신속처리절차 도입예정. 즉결심판 폐지...약식명령으로 흡수 추진, 법률신문 오피니언 2005.08.26.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kind=ba01&serial=16812>, 2014.10.24. 검색); 광영길,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2007, 48쪽.

7) 배종대 외, 앞의 책, 94/1; 신동운, 앞의 책, 1520쪽;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2008, 58/1.

8) 배종대 외, 앞의 책, 94/5; 이재상, 앞의 책, 58/3; 김용우, 앞의 글, 112쪽; 김희욱, 앞의 책, 36쪽; 황태정, 앞의 책, 25쪽.

9) 배종대 외, 앞의 책, 94/6; 이재상, 앞의 책, 58/4.

즉결심판절차는 폭증하는 - 범증이 명백한 - 경미사건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 하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급한 피고인을 시간적·정신적 부담으로부터 신속히 해방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¹⁰⁾ 이러한 점에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와 그 궤를 같이 한다.¹¹⁾

Ⅲ. 각 단계별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

1. 청구단계에서의 문제

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즉결심판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확정력을 갖는 판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이다.¹²⁾ 그런데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다. 사실상 공소제기와 다른없는 소송행위의 권한을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소독점주의의 중대한 예외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¹³⁾ 이처럼 법률로 정한 기소독점주의에 반하여 다시 또 다른 법률로 그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의 업무과중을 경감시키고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데에 그 기본취지가 있다고 한다.¹⁴⁾

10) 신동운, 앞의 책, 1523쪽; 이재상, 앞의 책, 58/2; 94/3; 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4, 6쪽; 박영길, 앞의 글, 49쪽; 최웅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2000, 231쪽;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 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0, 23쪽; 하태훈, 앞의 글, 27쪽.

11) 즉결심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의 비교는 아래의 IV. 2. (1) 참조. 이하에서는 압축적 논의를 위해 즉결심판의 처리절차·효과 등에 대한 - 법조문 나열과 다른없는 - 교과서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12) 황태정, 앞의 책, 100쪽.

13) 배종대 외, 앞의 책, 94/3, 95/1; 신동운, 앞의 책, 1524쪽, 1526쪽; 이재상, 앞의 책, 58/5; 김용우, 앞의 글, 114쪽; 김희욱, 앞의 책, 37쪽; 황태정, 앞의 책, 70쪽, 100쪽.

14) 황태정, 앞의 책, 100쪽.

이와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행사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을 검사에게 이양해야 하는가, (2)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행사에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즉결심판청구권을 계속해서 경찰서장에게 주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1)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청구권자 일원화의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하여 국가기관의 하나인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⁵⁾ 이렇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공소권을 일임함으로써 공소제기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고, 검사동일체원칙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¹⁶⁾

그러나 국가소추주의 내지 기소독점주의가 헌법적으로 선언된 원칙은 아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동법 및 하부 법령을 구속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법률을 절대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규정인 - 예외적으로 -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에게 사실상의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기소독점주의가 관료주의와 결합하면 - 더욱이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를 막을 수 없고, 사실상 정치권에 종속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을 고려하면 - 특히 정치적 현안과 깊이 관련된 사건에서 - 공소권의 독점은 해악이 될 소지도 적지 않다.¹⁷⁾

15) 배종대 외, 앞의 책, 27/1 이하; 신동운, 앞의 책, 371쪽; 이재상, 앞의 책, 25/4.

16) 배종대 외, 앞의 책, 27/3; 신동운, 앞의 책, 371쪽; 이재상, 앞의 책, 25/5; 한영수, 앞의 글, 68-69쪽; 황태정, 앞의 책, 101쪽.

17) 배종대 외, 앞의 책, 27/3, 27/11; 신동운, 앞의 책, 371쪽; 이재상, 앞의 책, 25/6.

2) 즉결심판청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고소·고발사건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취지 및 이유고지(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등의 제도로 통제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수단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⁸⁾ 그러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가 형사소송법 규정의 포괄적인 준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장치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행사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그밖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을 부여하면 공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⁰⁾ 그러나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용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검사 수준의 법률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절차진행에서 그 공정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²¹⁾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에 임명되는 계급은 총경으로 공무원임용규칙²²⁾ [별표 1]의 공무원경력 상응계급기준표(제5조 제3항 관련)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4급, 군인으로는 소령, 대학교원으로는 부교수에 상당한 직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²³⁾ 제5조 제1항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로 경정 및 경감은 각 3년 이상, 경위 및 경사는 각 2년 이상, 경장 및 순경은 각 1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경찰대학교 졸업자가 최초 경위로 임관하여 총경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 8년이 소요된다. 이 정도의 직급과 경력이라면 대체로 최소한 적법절차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기본원리와 즉결

18) 황태정, 앞의 책, 100쪽.

19) 강동욱, 앞의 글, 14-15쪽은 “즉심대상사건의 대부분은 … 단순 명백하고, 증거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작이나 자백강요 등, 단속 경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수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즉심회부여부가 결정되고 있으 … 므로 그 남용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20) 황태정, 앞의 책, 101쪽 참조.

21)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4집 제1호, 2002, 340쪽.

22) 행정안전부예규 제310호, 2010.6.29 시행.

23)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11.5 시행.

심판의 대상을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해당직무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능력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한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남용가능성에 대해 통계를 근거로 그 남용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즉 즉심청구사건에서는 무죄 및 청구기각의 비율이 매우 낮는데,²⁵⁾ 이는 사실상 청구권남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통계상 수치가 바로 청구권남용이 거의 없다는 평가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문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이 배제되면서 판사는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을 근거로 할 뿐 -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 내지 청구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²⁷⁾

나. 즉결심판청구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이다(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 따라서 형법범뿐만 아니라 경범, 특별법범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범과 경범 외의 특별법범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건수는 2003년부터 급감하여 즉결심판에서 그 비중이 매우 작아졌다.²⁸⁾ 이러한 이유로 경찰통계연보에서도 특별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현황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범에 대한 즉결심판청구현황에서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마시는 물 사용방해”, “의식방해”, “뒤통에 있는 음식물 판매”,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과

24)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 합격자는 경정으로 임관되는 특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3년이라는 승진소요기간이 필요하며, 특채임관자의 자격을 고려한다면 3년이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에 짧은 기간은 아닐 것이다.

25) 2013년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도 총 55,081건의 즉결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은 671건, 무죄는 61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제57호, 2014, 60-61쪽).

26) 강동욱, 앞의 글, 15쪽; 최응렬, 앞의 글, 249쪽.

27) 하태훈, 앞의 글, 33쪽.

28) 2013년 현재 즉결심판청구 총 건수 55,081건 중 특별법범에 대한 것은 8,646건(15.6%)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2002년에는 총 건수 644,709건 가운데 특별법범은 558,591건으로 8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제57호, 2014, 60-61쪽 참조).

같이 즉결심판청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형들을 비롯하여, 즉결심판청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과다노출, 무임승차, 금연장소흡연 등의 행위²⁹⁾가 형사처벌을 해야 할 행위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³⁰⁾ 이와 같은 지극히 경미한 위법행위는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한편 형법범 가운데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지극히 경미한 정도의 폭행이나 사기, 절도, 도박 등의 행위들이다.³¹⁾ 예컨대 도박죄의 경우 생활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액(판돈 20만원 이하)의 비상습적 사건으로 분석된다.³²⁾ 이들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검찰에 송치된 때에는 오히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형사처벌의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경우에 따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맞물려 발생하기도 한다.³³⁾

이와 같이 개별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즉결심판청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상당해 보이는 구성요건들이 다수 드러난다. 그리고 실제로 즉결심판절차가 경범죄처벌법상 — 그리고 2002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 부과된 범칙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용³⁴⁾되어 온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구성요건들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해야 할 당위성은 더 작아진다.

29)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제57호, 2014, 62-63쪽.

30) 하태훈, 앞의 글, 31쪽. 한편 물품강매·호객행위에 대해 2012년에는 단 1명만이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음에 반해, 2013년에는 무려 1,398명이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다. 마시는 물 사용방해도 각각 1,918명과 0명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즉결심판의 청구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제57호, 2014, 64쪽.

32) 이영돈, 앞의 글, 27쪽.

33) 김희옥, 앞의 책, 41쪽; 하태훈, 앞의 글, 30쪽.

34) 박규홍,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55쪽; 한영수, 앞의 글, 69쪽.

다. 피고인의 이의권 배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³⁵⁾ 즉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권은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고, 이의제도를 두게 되면 공판절차와 약식명령, 즉결심판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절차의 균형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약식명령에도 이의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 피고인의 이의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³⁶⁾

그러나 피고인이 즉결심판청구에 대해 이의를 갖는 경우에도 우선은 즉결심판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번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절차의 진행이라는 즉결심판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한다.³⁷⁾³⁸⁾ 여기에서 형사절차의 균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인의 절차상 기본권 보장이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보다 하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약식명령에서도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의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절차에도 피고인의 이의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³⁹⁾ 약식명령에 이의제도가 없다는 사실이 즉결심판에 이의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5) 배종대 외, 앞의 책, 95/3; 신동운, 앞의 책, 1526쪽; 이재상, 앞의 책, 58/7; 황태정, 앞의 책, 70쪽.

36) 김희옥, 앞의 책, 39쪽; 황태정, 앞의 책, 123쪽.

37) 강동욱, 앞의 글, 16-17쪽; 광영길, 앞의 글, 63쪽; 성윤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2006, 144쪽; 심희기,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형사정책연구 제44호, 2000, 84-85면, 90쪽.

38)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 즉결심판대상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시 관할지방법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게 함으로써(즉결심판법 제5조 제2항) 사실상 “경찰서장 → 판사(기각) → 경찰서장 → 검찰 → 판사(정식재판)”의 번거로운 경로를 경유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약식명령에서는 법원이 별도의 형식재판 없이 보통의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참조).

39) 김용우, 앞의 글, 128쪽.

라. 경찰서장의 훈방권

즉결심판사건에서 경찰서장은 범죄사실이 극히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범칙행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하고 방면하는 이른바 훈방권을 종종 행사한다. 다만 경찰서장의 훈방권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실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권(형사소송법 제247조)과 유사하게, 즉 기소편의주의를 준용하여 즉결심판절차에서 훈방권을 갖는다고 한다.⁴⁰⁾ 그리고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내부위임에 의해 파출소장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⁴¹⁾ 대법원도 “사법경찰관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⁴²⁾다고 하여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다만 즉심사범을 훈방조치하면서 사후에 감찰로 인해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근무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⁴³⁾은 경찰 스스로도 훈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체계와 모순될 여지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훈방권은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법체계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⁴⁴⁾ 다만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⁴⁵⁾ 즉결심판대상사건뿐만 아니라 기타 경미한 범칙행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훈방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즉결심판절차를 폐지하고 경범죄처벌법 등의 형사상 불법행위를 행정불법으로 전환하는 질서위반법을 제정하여 - 질서위반법 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0)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호, 2003, 20쪽.

41) 조국, 경찰, 앞의 글, 25쪽 이하.

42)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117 판결.

43) 황태정, 앞의 책, 117쪽.

44) 황태정, 앞의 책, 118쪽.

45) 훈방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만이 수사종결처분권을 갖는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조국, 앞의 글, 18쪽 참조.

2. 심리단계에서의 문제 : 소송경제를 위한 피고인의 기본권 제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보통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소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대해 피고인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즉결심판이 청구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기본권적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사의 선처만 바라는 입장에 서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⁴⁶⁾

가. 자백보강법칙 배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즉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즉결심판법 제10조).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 없이도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⁴⁷⁾ 이에 대해 1969년 제6차 개정헌법(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까지는 현행헌법 제1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제10조 제6항에 “정식재판에 있어서”라는 문구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었으나,⁴⁸⁾ 1980년 제8차 개정헌법(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정식재판에 있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이것이 현행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에까지 이어졌고 현행헌법상으로 즉결심판절차는 정식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는 입법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⁴⁹⁾ 이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보통의 공판절차를 제외한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이것만으로

46) 손동권, 앞의 글, 109쪽; 한영수, 앞의 글, 72쪽.

47) 황태정, 앞의 책, 76쪽.

48)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을 선언한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49) 황태정, 앞의 책, 76쪽.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7항에 비추어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을 배제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위헌이 아닐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경찰에서 행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특히나 증거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즉결심판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형사재판의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합헌성이 매우 의심스럽다.⁵⁰⁾ 제8차 개헌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⁵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굳이 “정식재판에 있어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 애초에 이러한 규정을 삭제했던 유신헌법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단계 발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 정식재판절차 이외의 재판절차를 만들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손쉽게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요컨대 헌법 제12조 제7항의 “정식재판에 있어서”라는 문구는 “위헌적 헌법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이 실제적 진실에 반할 소지가 있는 자백으로 인한 법원의 오판을 방지하고 자백을 얻기 위해 가해질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증거법칙이고, 재산형만 선고할 수 있는 약식명령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식재판이든 특별재판이든, 법정에서의 자백이든 경찰서에서의 자백이든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하등의 차별성이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⁵²⁾

50) 백형구, 즉결심판절차법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33호(1987/09), 49쪽(황태정, 앞의 책, 76쪽 각주 106에서 재인용); 박상진, 앞의 글, 346쪽; 황태정, 앞의 책, 113-114쪽.

51) “5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제2기 유신헌법”, 연합뉴스, 2010.05.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75167>, 2014.10.24. 검색).

52) 하태훈, 앞의 글, 36쪽. 다만 김희옥, 앞의 책, 53쪽은 재판상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보강법칙을 배제하고, 재판 외의 자백에 대해서만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임의성에 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판례는 진술의 임의성은 ...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316 판결) 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하면 즉결심판청구권자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인데, 즉결심판에서는 청

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제313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지향하는 즉결심판절차의 취지에 부합하고 자백강요에 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⁵³⁾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강요에 의한 자백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모호한 경계선상에서 행하는 수사경찰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를 부추길 수 있고,⁵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이러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즉결심판절차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개정 없는 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만으로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7조 제3항). 이는 유죄증거가 확실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판할 수 있을 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⁵⁵⁾

구권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임의성은 추정되어 이에 대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하태훈, 같은 글, 37쪽).”

53) 박영길, 앞의 글, 64쪽; 김희욱, 앞의 책, 50쪽; 최응렬, 앞의 글, 251쪽.

54) 배종대 외, 앞의 책, 95/17; 신동운, 앞의 책, 1529쪽; 손동권, 앞의 글, 108쪽; 황태정, 앞의 책, 114쪽.

라. 변호인의 증거조사신청권과 피고인의 증인신문신청권 배제

즉결심판의 심리절차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오로지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9조 제2항).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조사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인신문신청권도 배제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방어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특히 앞의 증거법칙 예외와 함께 졸속심리의 위험을 보다 크게 만든다.⁵⁶⁾

물론 즉결심판 피고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즉결심판법 제9조 제3항). 그러나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될 형이 비교적 가벼운 것에 비해 사선변호인의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즉결심판피고인이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⁵⁷⁾

이에 대해 즉결심판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권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견해⁵⁸⁾가 있다. 즉결심판으로 일단 빨리 판결을 내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혹은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을 설정해 두고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절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식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경우에도 ‘억울하다’며 항소·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이 제한된 신속한 절차보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절차가 만족스러울 것이다.⁵⁹⁾ 그리고 절차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도 두 번, 세 번의 재판을 거치는 것보다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한 재판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즉결심판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역으로 그러한 성격이 법치국가원리와 피고인의 절차적 인권보장에 반하는 경우 즉결심판 존치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55) 배종대 외, 앞의 책, 95/12; 황태정, 앞의 책, 74쪽.

56) 손동권, 앞의 글, 109쪽.

57) 손동권, 앞의 글, 113쪽; 하태훈, 앞의 글, 36쪽.

58) 김용우, 앞의 글, 117쪽.

59) 심희기, 앞의 글, 80쪽.

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즉결심판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즉결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에 의해 정식재판이 열린 경우 당해 정식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는 즉결심판법 제정시에는 법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가 곧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판사의 예단배제를 위해 법관의 제척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⁶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즉결심판법 제19조를 그 법적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¹⁾

3. 즉결심판의 효력(확정력) 문제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즉결심판법 제16조). 즉 이때 즉결심판에는 집행력과 기판력이 생긴다.⁶²⁾ 그런데 이러한 즉결심판의 효력을 악용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속하는 다른 중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⁶³⁾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나 비상상고와 같은 비상구제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의해 경한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사실상 중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⁴⁾ 이는 일반인의 법감정과도 큰 괴리를 보인다. 즉 예컨대 불안감조성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으로서 강간이나 상해치사의 중죄에 대한 면소판결선고⁶⁵⁾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⁶⁶⁾

60) 김희옥, 앞의 책, 72쪽.

61) 김용우, 앞의 글, 130쪽.

62) 대법원 1990.3.9. 선고 89도1046 판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2454 판결;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도1142 판결; 배종대 외, 앞의 책, 95/26; 김희옥, 앞의 책, 61쪽; 황태정, 앞의 책, 79쪽.

63) 배종대 외, 앞의 책, 94/4; 박상진, 앞의 글, 344쪽; 하태훈, 앞의 글, 34쪽; 한영수, 앞의 글, 70-71쪽.

64) 성윤환, 앞의 글, 133쪽; 황태정, 앞의 책, 115쪽.

또한 즉결심판에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즉결심판제도 자체에 자기모순을 야기한다. 즉 즉결심판에 확정력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력으로 인해 중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체적 정의의 실현불가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즉결심판의 확정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심판에 기관력을 부정하게 되는 “절차적 모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결심판의 확정력 문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범위를 규범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한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⁶⁵⁾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에 따르면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자연적·사실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해 확정된 경미한 범죄행위와 다른 중한 범죄행위의 동일성을 부인하면 즉결심판의 확정력이 다른 범죄행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논리가 즉결심판에 적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구류형 선고의 문제

자유형인 구류가 절차의 과도한 신속성과 형식성을 특성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것도 작지 않은 문제점이다.⁶⁸⁾ 특히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사절차상의 피고인 권리보호장치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⁶⁹⁾ 비록 30일 미만의 단기에 불과할지라도 시간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사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유박탈형인 구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적 요청이며,⁷⁰⁾ 특히 형벌론적 측면에서 구류형을 비롯한 단기자유형이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무용

65) 예컨대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도1790 판결.

66) 황일호,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2010, 334쪽.

67) 대법원 1994.0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68) 배종대 외, 앞의 책, 94/4; 신동운, 앞의 책, 1524쪽.

69) 한영수, 앞의 글, 67쪽; 황태정, 앞의 책, 108쪽.

70) 하태훈, 앞의 글, 30쪽; 한영수, 앞의 글, 66-67쪽.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⁷¹⁾ 따라서 즉결심판에 의해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 나아가 구류형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⁷²⁾

5. 실무상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동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거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내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도 경범죄처벌법 제9조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사실상 통고처분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즉결심판의 실상이라고 한다.⁷³⁾ ‘형벌부과업무’라기 보다는 ‘범칙금수납업무’, 즉 범칙금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범칙금이라는 행정제재 이행을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제재로써 담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불법을 형사불법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범칙금 납부는 예컨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면허박탈 내지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 즉결심판절차는 별건구속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⁷⁵⁾ 별건구속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으나 수상상황에 미루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영장 발부가 가능한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래 의도했던 사건을 수사하는 실

71) 배종대, 형법총론 제10판, 2011, 175/5; 박상진, 앞의 글, 348쪽; 최응렬, 앞의 글, 235쪽, 249-250쪽; 하태훈, 앞의 글, 31쪽; 황태정, 앞의 책, 93쪽.

72) 필자는 구류형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류형의 집행담보를 위한 수단인 유치명령제도도 구류형의 폐지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73) 곽규홍, 앞의 글, 55쪽; 황태정, 앞의 책, 89쪽.

74) 성윤환, 앞의 글, 125쪽, 134쪽; 심희기, 앞의 글, 80쪽, 94쪽; 한영수, 앞의 글, 69-70쪽; 황태정, 앞의 책, 92쪽.

75) 김희옥, 앞의 책, 41-42쪽; 황태정, 앞의 책, 102쪽.

무관행상의 방법으로, 본건의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 또는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자백강요나 수사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사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⁷⁶⁾

IV. 즉결심판절차 폐지의 당위성과 그에 대한 대책

1.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법치국가적 회의

즉결심판제도는 그 뿌리에서부터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법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⁷⁷⁾ 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사실상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강제로 이식된 법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 많은 부분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어쨌거나 - 정당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탄생에 심각한 정당성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운용에서 아무런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존치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즉결심판제도의 핵심은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경찰서장의 심판청구권, 자백보강법칙 배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경찰서장의 심판청구권 문제는 형사절차 진행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백보강법칙 및 전문법칙의 배제는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즉결심판제도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다. 특히 실제 즉결심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작성한 범

76) 배종대 외, 앞의 책, 18/37; 신동운, 앞의 책, 244쪽; 이재상, 앞의 책, 19/77; 손동권, 앞의 글, 101쪽; 한영수, 앞의 글, 70쪽.

77) 박상진, 앞의 글, 344쪽; 하태훈, 앞의 글, 27쪽.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에 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신동운,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16쪽 이하; 한영수, 앞의 글, 53쪽 이하; 황태정, 앞의 책, 27쪽 이하 참조.

죄사실의 끝에 피고인이 무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내지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는 현실⁷⁸⁾을 고려한다면, 자백보강법칙 배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으로 증거에 대한 재판이 아닌 심증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⁷⁹⁾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심판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기변명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그런데 즉결심판제도의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규정들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률 자체의 정당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2.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형사절차상 처리방안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동안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마련된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이들을 비교해 보고, 보다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가. 즉결심판과 약식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와의 비교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공판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⁸¹⁾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으로써 유·무죄에 대한 다툼이 없는 단순한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과 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사건에 더 충실하고 완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는다.⁸²⁾ 간이공판절차

78) 손동권, 앞의 글, 108쪽.

79) 황일호, 앞의 글, 327쪽.

80) 성윤환, 앞의 글, 127쪽.

81) 배종대 외, 앞의 책, 50/1; 신동운, 앞의 책, 916쪽; 이재상, 앞의 책, 35/1.

82) 배종대 외, 앞의 책, 50/3; 이재상, 앞의 책, 35/2 : 다만 간이공판제도의 내용은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이념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배종대 외, 같은 책, 50/3 참조.

에서는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당사자의 증거동의간주(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해 배제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이러한 측면에서는 즉결심판절차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백이 수사기관과 피고인의 왜곡된 협상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⁸³⁾ 전문법칙의 배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이공판절차는 공소사실이 경미 범죄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보통의 공판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개시의 측면에서 즉결심판절차와 동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약식절차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⁸⁴⁾ 약식절차 또한 소송경제의 실현과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경감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검찰실무에서 경미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정식재판청구권으로 피고인에게 불복수단 보장되고, 법관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결심판절차와 유사성을 띤다. 다만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로서 그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이며, 즉결심판절차는 공개심리와 구두변론에 의하고, 판사는 청구가 있는 즉시 심판을 해야 하며, 법률효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 구류가 가능한 반면, 약식명령은 그 청구와 동시에 별도로 공소제기가 필요하며 청구권자는 검사이고 서면심리에 의한다는 점, 그리고 판사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그 법률효과는 벌금과 과료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약식절차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및 증거조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즉결심판은 제한적이거나 공개법정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해 심리하므로 법관의 심증형성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⁸⁵⁾

83) 배종대 외, 앞의 책, 50/3.

84) 배종대 외, 앞의 책, 91/1; 신동운, 앞의 책, 1507쪽; 이재상, 앞의 책, 57/1.

85) 황태정, 앞의 책, 26쪽 각주 4).

나. 즉결심판청구 대상범죄를 약식명령으로 흡수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약식명령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약식절차에 의해서는 격증하는 경범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⁸⁶⁾ 이러한 병존 의의에도 불구하고 “경미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한, 보통의 공판절차에 부수하는 보조적 절차”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⁸⁷⁾ 또한 불출석심판제도의 시행과 이른바 보호청구의 폐지로 대부분의 즉결심판이 사실상 서면심사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절차와 구분한 실익도 청구권자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⁸⁸⁾ 양자는 특히 약식명령이 실무상 경한 범죄의 처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과 법률효과가 유사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의 대상을 약식명령으로 흡수시키는 데에는 - 일단은 -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 약식명령절차의 보완

다만 약식명령절차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한 서면심리절차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약식절차와 유사하게 소송경제의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된 즉결심판에서도 공개변론과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구두변론주의가 신속절차의 원칙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약식절차에도 공개주의와 구두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신속한 재판진행의 한 축인 피고인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의 해소를 위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심판 및 서면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서면심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약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요기간이 길게는 1년까지 간다는 비판이 있듯이 공정하면서도 경미사건에 대한

86) 황태정, 앞의 책, 26쪽.

87) 특히 형사소추권을 일원화하여 즉결심판청구권도 검사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즉결심판절차와 약식절차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다(한영수, 앞의 글, 76-77쪽).

88) 성윤환, 앞의 글, 126쪽, 134쪽.

신속재판이라는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인적·물적 자원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약식사건에서도 즉결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으로 인해 선고받을 벌금 내지 과료의 금액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약식사건은 서면심리만으로 종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더욱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이라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완하여 약식절차를 전담하는 전담변호인을 두거나, 또는 국가예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미국의 공공변호인제도(public defender),⁸⁹⁾ 일부 변호사사무실에서 행하고 있는 소송도우미 변호사나 소액사건전담 변호인⁹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선결문제

가. 형사불법과 행정불법의 명확한 구분

위에서 위반법규별 즉결심판청구 현황에 대한 경찰통계연보에서 보았듯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은 형사불법이라기 보다는 질서위반에 가까운 행위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위반행위들은 대체로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은 - 구류형을 제외한다면 - 사실상 과태료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⁹¹⁾ 그렇다면 더더욱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률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당벌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이러한 다발성의 정형적 행정불법들을 형사불법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체계에 적지 않은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

89) 손동권, 앞의 글, 117쪽 참조.

90) 하태훈, 앞의 글에 대한 황인상 변호사의 토론요지, 같은 글, 44쪽 참조.

91) 조국, 앞의 글, 24쪽.

하고 있다.⁹²⁾ 따라서 형사불법과 행정불법을 명백히 구분하고 즉결심판의 대상과 같은 행위유형들은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비범죄화하여 행정제 재화하면 경미한 범법자의 과도한 전과자화를 방지하고 사법체계 전체의 부담도 감소할 것이다.⁹³⁾ 그리고 행정질서벌로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당해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와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⁹⁴⁾ 앞에서 살펴본 기관력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범죄화 주장에 대해 기초질서사범을 비범죄화하면 형벌권이나 경찰권의 약화를 가져와 기초질서문란 만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⁹⁵⁾도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가 바로 비제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제재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면서도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

나. 검찰과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 확충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상범죄를 약식명령제도에 흡수할 경우, 약식명령 사건이든 즉결심판사건이든 최종심판은 모두 법원이 담당하고 있던 것이므로 법원의 관점에서는 그 부담정도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201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56,099명을 즉결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의 수로 단순히 나누어 보면 한 법원(지원)당 즉결사건에 회부된 인원은 한 해에 약 9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92) 황태정, 앞의 책, 98쪽.

93) 배종대 외, 앞의 책, 94/4; 박상진, 앞의 글, 351쪽; 손동권, 앞의 글, 103쪽, 121쪽; 심희기, 앞의 글, 86쪽; 조국, 앞의 글, 23쪽; 최응렬, 앞의 글, 253쪽; 한영수, 앞의 글, 63-64쪽; 황태정, 앞의 책, 98쪽 이하.

94) 황일호, 앞의 글, 332쪽.

95) 곽영길, 앞의 글, 67쪽 각주 29).

96) 형사불법과 행정불법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해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 질서위반법을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질서위반법 및 기타 외국의 유사입법례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용우, 앞의 글, 118쪽 이하; 성윤환, 앞의 글, 135쪽 이하; 조국, 앞의 글, 23쪽; 한영수, 앞의 글, 74쪽 이하.

이는 당장 즉결심판을 폐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의 증가가 검찰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증가할 수 있는 검찰의 업무부담의 분산을 위해서는 법원 조직에 맞추어 - 현행법상 즉결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이를 약식명령으로 흡수한다고 할 때, 경미한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맞추어 시·군 검찰청을 설치하는 방법⁹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검사제도⁹⁹⁾나 검사직무대리제도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직무대리제도가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은 일반직 서기관과 사무관의 지청검사 직무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신분보장의 정도를 제외하고는 부검사제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검사제도 보다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¹⁰⁰⁾ 그러나 부검사제도나 검사직무대리제도 모두 정식 검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수사종결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즉결심판청구권자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⁰¹⁾

따라서 사법체계 전체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판·검사의 수(인적 자원)와 경미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수(물적 자원)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고 또한 국민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¹⁰²⁾ 다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⁰³⁾ 그러나 완전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각 부처간·직급간 예산 할당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허투루 쓰이는 눈먼 예산을 과감히 사법체계 쇄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산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⁴⁾

97) 성윤환, 앞의 글, 126쪽; 심희기, 앞의 글, 80쪽.

98) 신동운, 앞의 글, 35쪽 이하; 황태정, 앞의 책, 121쪽 이하.

99) 이는 정규적인 법조인 선발경로를 거치지 않았으나 일정한 기본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중간층의 법조인력에 경미사건처리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100) 부검사제도와 검사직무대리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태정, 앞의 책, 105쪽 이하 참조.

101) 조국, 앞의 글, 24쪽.

102) 한영수, 앞의 글, 74쪽.

103) 신동운, 앞의 글, 13쪽.

V. 맺는 글

사법체계의 현실적인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특히 다발하고 있는 경미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범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정신적·시간적으로 현저하게 부담스러운 절차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큰 이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신속한 재판이라는 소송경제의 이념이 헌법적으로 선언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소송경제가 법치국가원리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앞서는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¹⁰⁵⁾ 또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졸속재판으로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도 반한다.¹⁰⁶⁾ 따라서 실제진실발견이나 절차의 적정성이 경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기타 인권의 침해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사범에 있어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장점이 커 즉결심판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견해¹⁰⁷⁾는 설득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범죄유형, 그리고 더 나아가 소위 경미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들을 소위 “질서위반법”을 도입함으로써 비범죄화·질서

104)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문제 이전에 일선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면서 업무량에 비해 실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으나, “회소해야 자신들의 가치가 보전된다”는 몇몇 ‘윗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대한 고집이 예산문제보다 더 큰 걸림돌이라는 푸념도 단순히 흘러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5) 박상진, 앞의 글, 347쪽, 350쪽; 하태훈, 앞의 글, 29쪽; 한영수, 앞의 글, 59쪽; 황태정, 앞의 책, 24쪽, 130-131쪽.

106) 하태훈, 앞의 글, 28쪽.

107) 박영길, 앞의 글, 67쪽.

위반행위화함으로써 범칙행위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방지하고 사법체계 전체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즉결심판의 대상행위 가운데 여전히 형사불법으로 남는 행위유형들은 약식명령의 대상으로 포섭함과 동시에, “공정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에 치우친 듯한 약식명령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함으로써 경미범죄에 대한 보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형사절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희옥,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배종대, 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1.
-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 논 문

- 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경찰대학, 2014.
- 곽규홍,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 곽영길,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7.
- 김용우,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중앙법학 제4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2.
- 성윤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6.
-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3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여름.
- 신동운,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심회기,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
심판실무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4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이영돈, 즉결심판의 청구 대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경찰대학, 2010.
- 조 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호, 한국경찰법학회,
2003.
- 최응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 하태훈, 즉결심판절차와 피고인의 인권, 한국법학원보 제85호, 한국법학원, 2000.
- 한영수,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3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봄.
- 황일호, 즉결심판과 통고처분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효력,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0.

3. 기 타

- 대법원, 2013 사법연감, 2014.
-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제57호, 2014.

Critical Research on the instant judgement proceedings

Im, Seok Soon

Because of the personal and substantial restriction in the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perform the proceedings of minor offense quickly. For an accused it would be a great advantage to exempt himself from a temporally and spiritually burdensome proceedings. In criminal proceedings in which fundamental rights may be restricted extensively and highly, but the idea of procedural economy may not take priority over the rule of law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accused, even though it is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lso confronted with the idea of rapid judgment, when the fast judgment would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 and the right of defense of the accused. The current system of the instant judgement proceedings excludes the principle of confession and the principle of hearsay, so it must be abolished because of the risk of harm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accused.

The offenses that were the subject of the instant judgement proceedings and the minor offenses need to be decriminaliz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misdemeanor law” in order to avoid an unnecessary stigma of a minor offenses and to minimize the burden of the whole judicial system. The other kind of offenses which still need to be punished,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s of the instant judgement proceedings and also the summary proceedings should be perfected.

❖ Keyword: Rule of law, defense right of the accused, fair and rapid criminal proceedings, Principle of confessions reinforcement, Hearsay rule

투고일 : 2월 4일 / 심사(수정)일 : 3월 20일 / 게재확정일 : 3월 20일